

2023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주지방검찰청 2023년도 제1회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근무지)	담당업무
청원경찰	1명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시 덕진구)	- 청사 방호 - 출입 차량 및 인원 통제 - 주야간 순찰 활동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대검찰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1248호)」

3.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제3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다음 요건을 갖춘 자(2개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함)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일 것

4.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상시 근무에 대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증빙 필요

※ 직무 관련 분야: 방호·경비, 청원경찰 근무 경력(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함(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단수별 차등 배점, 2단 이상)

※ 무도단증의 단수 산정은 무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별첨> 무도 관련 자격증 인정 단체 참고

○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경비지도사(일반),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참고 사항

공 통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직무 관련 분야: 방호·경비, 청원경찰
 - ※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8시간/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 예시: 4년간 주 20시간을 근무한 경우 = $4년 \times (20시간 / 40시간) = 2년$ 인정
- 서류전형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근무기간,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함
 - ※ 보완서류는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 심사 기준】

- | | |
|-------------------|------------|
|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② 공인무도단증 |
|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 | ④ 직무관련 자격증 |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평정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항목】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창의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불합격 기준】

- | |
|--|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
|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단 계	일 시	주 요 내 용
채용공고	'23. 12. 18.(월) ~ '23. 12. 29.(금)	• 전주지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접수	'23. 12. 22.(금) ~ '23. 12. 29.(금)	• 접수처: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7층)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4. 1. 11.(목) ('24. 1. 15.(월))	• 전주지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합격자 개별 통지
면접시험	'24. 1. 18.(목)	• 면접장소 : 전주지방검찰청 소회의실(7층) ※ 면접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4. 1. 26.(금)	• 전주지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합격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jeonju), '알림마당 >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jobs.go.kr>),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3. 12. 22.(금) ~ 2023. 12. 29.(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전주지방검찰청 7층 총무과
※ 주소 : (우 54867)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방문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8.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작성)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재학, 휴학, 재적, 졸업예정 등) 증명서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업체명(근무처),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사용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신분 및 보수수준

-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시행령」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10.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청구기간 : 2024. 1. 27.(토) ~ 2024. 2. 26.(월)

※ 제출서류 반환요청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이메일(hudin1@spo.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63-259-4632)에게 유선으로 요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3-259-4543, 4632 채용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9)**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 총연맹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	--